

## 29.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입법에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51호 1999. 1. 30

### 개정이유

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(1999. 1. 25. 법률 제5,688호)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에 주민공람, 예정지구지정제안 및 민간사업자의 택지개발사업 대행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, 주민공람, 예정지구지정 제안 및 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절차를 마련하고,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가. 예정지구지정 제안서, 예정지구조사서 등을 구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하도록 하였고, 지방공사 및 민·관합동법인은 시·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안하도록 함.
- 나. 예정지구의 지정제안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함.
- 다. 건교부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서류 사본을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간 주민에게 열람하도록 함.
- 라. 예정지구 면적을 축소하거나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확대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도록 함.
- 마. 택지개발사업의 대행개발사업자는 실시설계, 부지조성공사, 기반시설공사 및 분양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, 사업비 부담액 및 공사비등은 조성택지를 현물

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- 바.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한 경우 수도권지역안에 서도 일정 규모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.
- 사. 유치원용지에 입시계학원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완화
- 아.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 함.
- 자. 택지조성원가 산정에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을 반영토록 함.